

	<b>직업기초능력 및 기초학습능력 향상위원회 운영규칙</b>	규정번호	5-0-23	
		제정일자	2015.01.05.	
		개정일자		
		개정번호	Ver.0	총페이지

**제1조 (목적)** 이 규칙은 직업기초능력 및 기초학습능력 향상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**제2조 (구성 및 임기)** ① 위원회는 교학처장, 교무부처장, 산학협력처장, 기획처장, 교수학습개발센터장, NCS교육운영지원센터장, 교양과장 등의 당연직 위원과 총장이 임명하는 8인 이내의 전임교원으로 구성한다.

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교학처장이 된다.

③ 당연직 위임의 임기는 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하며 총장이 임명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.

**제3조 (기능)** 위원회는 학생들의 직업기초능력 및 기초학습능력 향상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

1. 직업기초능력 및 기초학습능력 향상을 위한 계획 수립, 운영에 관한 사항
2. 기초학습능력 진단도구 개발에 관한 사항
3. 직업기초능력 및 기초학습능력의 향상도 평가, 개선, 환류에 관한 사항
4. 기타 직업기초능력 및 기초학습능력 향상에 관계되는 제반 사항

**제4조 (회의소집 및 의결)** ①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하며, 위원장이 의장이 된다.

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며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 다만, 가부 동수일 때에는 의장이 의결권을 갖는다.

**제5조 (회의록)**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하며, 회의록은 위원장 및 출석위원 2인 이상의 서명이 있어야 한다.

**제6조 (사무)** ① 위원회의 사무는 교학처에서 관장한다.

② 위원회에는 회의록 작성 등 사무 처리를 위하여 1인의 간사를 두며, 간사는 교학처 직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.

**제7조 (규칙의 개정)** 이 규칙은 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승인을 받아 개정한다.

### 부 칙

(1) (시행일) 이 규칙은 2015년 1월 5일부터 시행한다.